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199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

## 목 차

□ 결산검사의견서	3
I. 결산검사개요	5
II. 일반회계 결산	6
1. 세 입 결 산	6
2. 세 출 결 산	12
III. 특별회계 결산	18
1. 세 입 결 산	18
2. 세 출 결 산	19
IV. 개선을 요하는 사항	21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2000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로부터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2000년 5월 29일부터  
2000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로서 1년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실적보고서  
이기도 하므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서대로 성실하게 집행되고  
집행내용도 제반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져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나, 과다한  
지방채 차입과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예산전용등 예산  
집행의 예외규정의 폭넓은 활용, 잡다한 특별회계의 설치, 무분별한  
기금의 운용등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결산서  
상에 내포하고 있어 가급적 단순, 간결해야 할 결산이 해가  
갈수록 복잡 다양해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결산의 이해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봄.
- 예산규모로 볼 때 98년도의 155,513백만원보다 4,195백만원이 줄  
어든 151,319백만원으로 97년도 180,445백만원 이후 2년째 계속  
예산규모가 줄어들어 I.M.F이전 97년도 대비 83.8% 수준의 예산  
규모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가 곧바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영수익 사업등 대체수입원 발굴에 노력해  
야 할 것임.

- 세입부분의 체납세 누증과 세출부문의 경상비 증가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나, 반면 징수 불능 세입 미수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98년도 결손처분액 381백만원 보다 287% 증가한 1,094백만원의 미수납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의 고질적 문제인 명시, 사고이월비가 98년도 35,259백만원 보다 6,906백만원 줄어든 28,353백만원만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예산 불용액도 전년보다 1,518백만원 줄어든 8,095백만원으로,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임.
- 기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제출한 1999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유첨된 부분별 결산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변동내용과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이 선 용

위원 최 상 호

위원 노 경 규

위원 추 영 종

## I . 결산검사의 기본방향과 범위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결산검사 항목

- 결산총괄 설명서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 행위)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보고서
-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 결산검사의 범위

- 계산의 과오여부
-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

## II. 일반회계의 결산

### 1. 세입의 결산

#### (1) 세입의 결산총괄

##### 가. 요약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98	'99	'98	'99	'98	'99	'98	'99
지 방 세	27,467	26,661	32,424	34,992	27,956	27,865	4,468	7,127
세외 수입	57,872	56,415	60,160	60,826	57,078	57,103	3,082	3,723
지방교부세	13,975	12,697	13,975	12,704	13,975	12,704		
지방양여금	5,524	5,295	5,181	5,295	5,181	5,295		
보 조 금	33,977	39,017	33,947	39,007	33,947	39,007		
지 방 채	5,260	300	5,210	150	5,210	150		
합 계	144,076	140,385	150,897	152,974	143,347	142,124	7,550	10,850

##### 나. 세입결산총괄·검사의견

- 1) '99세입금 수납액 142,124백만원은 예산액의 101.2%로 1,739백만원 초과달성이니,
- 2) 일반회계 수납액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감소로 인한 세입수납액 초과달성 이므로 농수산물물류센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6,593백만원 및 98년 대비 지방채 감소액 5,219백만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납액을 분석

해 볼 때 '99수납액은 102,977백만원으로 98년 수납액 대비 98.4%에 불과해, 전년도비로 볼 때 다소 부진한 세입실적임.

### 3) '99세입부진의 주요원인을 분석해 볼 때

- ① 미수납액이 10,8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3%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의 전년대비 159.6 % 증가가 주요 요인임.
- ② 미수납액이 대폭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지단계에서부터 체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내 징수실적의 재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부단한 체납액 축소노력에 의한 세입확보가 필요함.
- ③ 또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도 92.9%로 저조한 바, 이는 주민세체납액이 1,828백만으로 전년대비 275.3% 대폭 증가한 결과 및 과태료 미수납액의 계속적인 증가에 기인함.

## (2) 세입부문별 검사의견

### 가. 지방세 부과부분

숨은 세원발굴에 의한 '99년 과징실적이 292건,2,099 백만원의 추징실적을 거양하였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원정보 수집노력으로 적기에 세원을 포착함으로서 조세일실을 방지해야 할 것임.

나. 일반회계 결산서상 수납액은 142,124,338,354원이나, 1999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상 일반회계 수입액 합계액은 143,124,338,354원으로 1,000백만원의 차이가 나타남. 이는 97년도에 대구은행에 적립한 정기예금을 군 금고계좌로 이관시키면서 농협중앙회 일계표에 세입금, 대구은행 일계표에 지출금으로 처리하여 99년 세입금에

1,000백만원을 중복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다. 지방세 징수부분

##### 1) 과오납금 처리

- ① 매년 반복 지적함과 같이 신고오납 및 이중수납으로 과오납 반환이 381건 49.4%를 점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이증발부등은 민원야기 사항이므로 축소 되도록 특히 유의 해야함
- ② 98년 이전부터 지적된 연도이월 미환급액에 대하여는 “발견즉시”직권으로 과오납 환급조치함으로써 '99년 이월분 미환급세액은 없음.
- ③ 옥포면 본리리 세창산업사 유세창에 대한 중소기업창업감면에 관련한 환급세액 11,360,320원에 대한 환급신청에 대하여 본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 가치세법에 의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사실 판단에 관한것으로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청구”에 의한 업무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인 것을, 담당자 직권으로 판단하여 환급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업무 자세로 판단됨.

## 2) 체납액 정리업무에 있어

- ① 과년도분 불납결손액 729백만원으로 이는 '98년대비 445.9%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 의지가 반영된 체납처분 실적으로 분석되나,
- ② 고액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정리 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심의절차에 의한 무재산 확인 및 재기불능으로 징수가 불가능함으로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다수인의 심의 판정 절차가 필요함으로
  - 지방세법상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나,
  - 담당자의 조사의견 및 관리자의 최종결재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 재심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결손 처분조사가 필요한 사항임.
- ③ “불임 유가면 양리 573-2 대우산업”의 99년 3월수 시분외 2건의 체납액 23,254천원을 2000년2월28일 결손 처분하면서,
  - 상기 주소지에서 영업중이나 부도상태임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하여 결손처분 하였으나,
  - 영업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상품, 재고자산등 환가가치있는 재산을 수색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야 함에도 부도가 나고, 경매가 개시되었다 하여 결손처분하였는 바, 이는 조사미진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됨.

- ④ 반복 지적한 바와 같이 고액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액관리카드”를 비치 매월 결재하고 있으나, -총 발생체납액, 체납경위, 현재 총체납액, 압류등 체납처분 진행사항, 향후 징수 가능 여부를 고액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자가 결재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 관리하여야 하나,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서식에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결재만 받고 있는 사례도 있었음.
- ⑤ 또한 부동산 압류물건에 대하여는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 및 배분 가능액을 표시하여 채권확보 가능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관리해야 하나, 정확한 우선채권을 파악하여 관리하지 않음.

#### 라. 세외수입 부문

##### 1) 요약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8	'99	'98	'99	'98	'99	'98	'99
금 액	57,872	56,415	60,160	60,826	57,078	57,103	3,082	3,723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 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0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1%로 증가하였는바 99년 시세 징수실적이 21,715 백만원(98년 징수실적 16,165백만원) 증가함에 기인 하며, 이는 강창하이츠 및 다사 보성아파트 준공입 주로 증가하였음.
- ② 임시적 세외수입의 폐기물수수료 미수납액 19,888, 470원 전액을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처분하였는 바, -93년 이월액 3,702,030원 및 94년 이월액 5,361,580 원의 미수액이 있으나 매년 반복하여 일체의 재산 조사 및 체납처분 절차없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고 있음.

## 2) 과태료 감소 및 미징수액 증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미징수액		비 고
	'98	'99	'98	'99	'98	'99	
금 액	1,172	1,639	545	632	627	1,007	

- 노래연습장 단속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에 신규세원 발생하였음.(징수결정액 200백만원, 수납액 40백만원)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차량과태료 부과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징수액 감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 환경관련 과태료가 '99년 12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대폭 증가함.

## 2. 세출의 결산

### 가. 요 약

(단위: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사용	예산이용
1999년	105,126	35,259	944	0
1998년	105,478	38,598	2,124	0
1997년	134,887	28,540	172	0

  

예산전용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29	140,385	104,971	28,080	7,334
18	144,076	100,299	35,259	8,518
230	163,427	107,667	38,598	17,162

### 나. 세출결산총괄 검사의견

당초 예산액 87,870백만원에서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으로 120% 늘어난 최종 예산액은 105,126백만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259백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140,385백만원임.

예기치 못한 지출요소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가 예산액의 3.8%를 차지하는 3,987백만원이며, 그중에 944백만원이 수해복구에 사용되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출예산의 과다 또는 삭감된 예산을 부당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서 예산사장한 사실과 예비비 지출결정은 대부분 연도말에 지출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출결정액중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비 본래의 목적인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지출사유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3회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에 의하여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이월을 전제로 연도말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짐.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예산전용은 그 본래 취지보다는 공공근로사업에 예산편성 과목구분 착오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229백만원이 사용되어져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을 거하여야 하겠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104,971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과 결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명시 및 사고이월로 익년도로 예산이월된 것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비를 줄이기 위하여 년말 국·시비 교부내시나, 수해복구공사등의 년말 발주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상부건의 등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것임.

#### 다. 부문별 결산 의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출납사무가 종결되고 제반장부가 마감되어져야 하나, 지출부 전산프로그램의 불안정으로 월계만 집계되고 누계가 출력되지 않아 결산서와 제반 장부와의 검증이 어려웠고 결산서에 오자와 탈자가 일부 발생하여 정확한 결산검사를 저해 하였음.

-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에 의거 세출예산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나, 99회계연도 출납정리 기간인 2000년 1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금등 25건이 군금고의 신구년도 구분 착오로 타년도 회계에서 지출되어 최종 출납정리일인 2000년2월29일에 일괄 군금고에 회계구분 정정요구를 하여 일계표 정리하는등 군 금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음.
- 세출예산의 지급은 지급명령발행부에 의거 통상지급 또는 집합지급, 계좌입금지급명령을 발부하여 군 금고를 통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매일 지급명령부와 금고의 일계표를 대사하여 일일결산 하고 익일 지출시에는 전일까지 세입대 세출결산상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을 발하여 야 함.  
1999년도중 총 지급명령발행건수는 7,275건이며 이중에 지급명령되었다가 군 금고 예금잔고 부족을 이유로 당일 지급명령 취소된 건수가 79건임.

이는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군금고 일계표상 잔액중 극히 제한적인 자금만 군금고 보통예금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잔액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자금여유율이 낮아 예상치 못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나 도로등 공공용지 편입토지 용지보상금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기 지급 명령되었던 지출건 중 일부가 지급명령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됨.

99년도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의 2,4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자금운영측면에서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일일 자금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금 명령된 지출건이 지급명령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하겠음.

- 예산은 그 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수치로 나타낸 계획서이므로 사전에 행정수요나 자금소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 하여야 하나,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임에도 20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중 143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시녹지과 도시개발 부서 일반운영비도 당초예산 154백만원에서 2회 추경시 100백만원을 추가확보하여 합계 254백만원 예산중 197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회의 예산삭감을 염두에 두고 미리 가상의 수치를 예산요구한 결과로 보여짐.

또한 지방채 채무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와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반납을 위한 반환금은 정확한 소요액 파악이 가능함에도 각각 40백만원과 80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시 소홀하였음이 확인됨.

- 지방재정은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지방채차입등으로 자치단체가 빚을 내옹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가급적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것임.

98년말에 환경부로부터 낙동강수질개선사업비로 3,760백만원 지방공공자금채를 차입하여 현풍시가지 하수구정비공사등 8개 하수구 정비공사로 3,692백만원 예산편성하여 2,812백만원을 연도중 집행하고 잔액 880백만원중 212백만원은 2000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663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결국 불용잔액 663백만원은 불필요하게 차입한 것으로 원금상환 시까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는 물론이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할 지방채 차입을 과다하게 차입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원칙에 크게 어긋나게 예산운용 하였음.

- 결산상 잔액은 당해연도 총 수입금액에서 총 지출된 금액을 제한금액으로 결산시점에서 본청 실과소 일상경비 출납원과 사업소 및 읍면 지출원에게 당해 연도에 자금배정 및 자금 재배정된 모든 자금중 미집행된 잔액은 모두 군 금고로 반납되어 전체 결산상 잔액으로 나타나야 함.

비슬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98년도에 비슬산임도피해복구 공사비 34,940,100원을 99년도 사고이월시키면서 미집행된 사고이월비를 계속 지출원 통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99년 도에 공사비를 모두 집행하였음

이 경우에는 '98 미집행 잔액인 사고이월비는 군금고로 자금반납 한 뒤 99회계연도에 사고이월비로 다시 자금배정 받아 99회계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어져야 함.

98년도 미집행 잔액을 자금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99년도로 2개 연도에 걸쳐 자금집행함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남.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관계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본예산 의결시에 같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항목임. 99년도 본 예산 명시이월비 조서에 의하면 모두 31건에 27,845백만원이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결산결과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은 30건에 26,336백만원으로 1,59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특히, 용연사석조계단주변정비공사비 40백만원은 98년도 출납정리기한중이 99년2월에 예산집행이 되어 9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등 명시이월 대상사업 선정과 명시이월비 판단에 소홀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의결 받아야 함에도 변경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III. 특별회계의 결산

#### 1. 세입의 결산

##### (1) 요약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98	'99	'98	'99	'98	'99	'98	'99
주택사업	126	107	117	105	117	105		
의료보호기금	5,823	6,064	5,828	6,068	5,823	6,065	5	3
새마을 소득	273	447	275	427	275	427		
농공지구	943	484	748	690	748	690		
치수사업	4,272	3,832	4,372	4,164	4,372	4,164		
합 계	11,437	10,934	11,340	11,454	11,325	11,451	5	3

##### (2) 검사의견

가. 수납액 11,451백만원은 예산액의 104.7%로 102백만원 초과수납하였으며, 이는 특별회계 주수입원인 치수사업 즉 골재매각수입이 당초목표보다 2000m<sup>3</sup>초과 판매 및 골재단가 높은 골재판매로 예산액 대비 331백만원 증가함에 기인하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경기침체등으로 감소하고 있음.

나.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 484백만원 대비 수납액은 690 백만원이나, '99년중 융자일시금 상환업체는 1개업체 366 백만원만 상환했음으로 조기회수에 노력해야 할 것임.

## 2. 세출의 결산

### (1) 요약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98	'99	'98	'99	'98	'99	'98	'99
합 계	11,437	10,934	10,332	9,900	237	272	1,105	762
주택사업	126	107	31	20			95	87
의료보호기금	5,823	6,064	5,822	6,063			1	1
새마을 소득	273	447	188	347			85	100
농공지구	943	484	442	107			501	377
치수사업	4,272	3,832	3,849	3,363	237	272	423	197

### (2) 검사의견

- 주택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 농공지구는 제3회 추경시 차입금 이자 46,097천원을 잘못 산감시켰다가 연말에 차입금원금에서 차입금이자 쪽으로 다시 36,648천원을 예산전용하여 예산전용을 예산탄력적 운용이 아닌 예산편성 착오분 정정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새마을소득의 경우는 3회에 걸친 추경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400백만원에서 최종예산액 447백만원으로 증액 시켜 놓고

는 연말에 100,000천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새 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축소시행하거나 미미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 IV. 개선을 요하는 사항

### 1. 결산서상 미수납액 파악의 정확성 결여(계속지적)

#### < 현황 >

세입세출결산시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파악에 있어서 읍면의 징수부상 이월액 조서를 징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 징수부에는 과년도분중 이월액에 감액표시( $\triangle$ )된 다음연도 이월액을 체납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이월 미수납이 '99년도에도 군세에만 34,222,970원이 과소 계상되었음.

#### < 개선안 >

-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읍면별 실제 총체납액을 파악하여 이월액에 감액표시된 액수는 원인을 파악하여  
①연도구분이 잘못되었으면 연도를 수정하고  
②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면 수정징수 결정하여야 정확한 결산서상 다음연도 이월액을 계상할 수 있음.

### 2. 과오납액 반환(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검토

#### < 현황 >

옥포면 본리리 2135-1 세창산업사 유세창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99년4월 수시 과오납액 11,360,320원 을 반환함.

### < 문제점 >

- ① 당 업체는 99. 6.21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신청서상 개업일을 99. 4.10로 기재함)
- ② 창업에 관련한 부동산 취득: 99. 4. 16 낙찰대금 납부
- ③ 사업자는 99.7월 중소기업창업감면에 해당한다며 과오 납 신청  
-사업자등록(제조 자동차부품)은 99.6.10에 했으나  
-사업계획의 구상은 99.1월초부터 했음에도 개업년월 일을 99.4.10로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 교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 당연함을 주장하였고
- ④ 처분청에서는 법규해석에 다툼이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 정한 복불신청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담당자가 임의로 해석하여 금 11,360,320원을 과오납반환 처리하였음.

### < 개선안 >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는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는 사업개시일이며

- 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개업일)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며
- ③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3-21-2(사업 개시일 정의)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④ 당 사업자는 제조 자동차 부품업을 개업하고자 하여 상기 부동산을 99.4.16 취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99.6.21하였으며 99.4.10부터 제조업을 하기위해 개업 일로 기재했다 하나,
- 상기와 같이 제조업 사업개시일은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함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자산을 취득하는 날을 제조업의 개시일로 보기에는 다툼이 있으며,  
-“붙임”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 준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상기 사업자는 자산취득은 99.4.16에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99.6.21에야 하면서 99.4.10로 표시하였다하여 감면신청한 본 건 과오납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할 것임.
- ⑤ 상기와 같이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판정에 다툼이 있는

것은 불복청구절차를 밟아 그 당위를 판단할 수 있는  
상위기관에서 그 정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담당  
자 재량으로 처분한 본건 과오납반환은 취소하여 정당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